

의안번호	제 99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03월 08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7
----------	-----

제출연월일 : 2022년 03월 08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소방 인력 증원 및 도정현안 등을 반영한 정원 조정 사항을 조직 효율성 및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총 정 원 : 4,700명 → 4,819명 (+11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21명 → 1,823명 (+2명)
 - 소방공무원 정원 : 2,728명 → 2,845명 (+117명)
 - 교육공무원 정원 : 43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처 정원 : 89명(변동 없음)
 -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 19명(변동 없음)
- 소방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안 별표 2)
 - 소방정 이상 : 2% 이내 → 1% 이내
 - 소방령 : 4% 이내 → 3.5% 이내
 - 소방위 : 9% 이내 → 12.5% 이내
 - 소방교 : 30% 이내 → 29% 이내
 - 소방사 : 27% 이상 → 26% 이상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반직 : 1,684명 → 1,686명 (+2명)
 - ▶ 4급 이상 (△1명), 5급 이하 (+3명)
 - 소방직 : 2,728명 → 2,845명 (+117명)
 - ▶ 소방정(+1명), 소방령 이하(+116명)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6.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700명”을 “4,8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21명”을 “1,82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본청 및 소방서”를 “본청, 소방서 및 충북안전체험관”으로, “2,728명”을 “2,845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9% 이내	35.5% 이내	34% 이내	4% 이상	1.5%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20% 이내	80% 이상	26% 이내	74%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5% 이내	10% 이내	12.5% 이내	18% 이내	29% 이내	26%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4% 이내	26%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4,819	-					
정무직 계	3	1					2
도지사	1	1					
위원장	1						1
상임위원	1						1
일반직 계	1,686	-					
1~2급	1					1	
2~3급	2	1	1				
3급	12	10		1		1	
3~4급	2	2					
4급	75	49	8	5	7	5	1
5급이하 소계	1,578	-					
전문경력관 소계	16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					
연구직 계	199	-					
연구관	32			31	1		
연구사	167	-					
지도직 계	31	-					
지도관	6			6			
지도사	25	-					
소방직 계	2,845	-					
소방정	18	5		13			
소방령이하	2,827	-					
교육공무원 계	43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1			31			
조교	11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4,700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821명</u></p> <p>2. <u>본청 및 소방서</u>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2,728명</u></p> <p>3. ~ 5.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4,819명</u>----- --.</p> <p>1. ----- <u>1,823명</u></p> <p>2. <u>본청, 소방서 및 충북안전체협관</u>----- <u>2,845명</u></p> <p>3. ~ 5. (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개정 사유

- 소방 인력 증원 및 도정현안 등을 반영한 정원 조정 사항을 조직 효율성 및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정원조정 내역 (안 제2조)
 - 총정원 : 4,700명 → 4,819명(+119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증원 119명(일반공무원 2명, 소방공무원 117명)

나. 추 계 결 과 : 인건비 48,042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 출	48,041,961	7,365,426	9,958,056	10,097,469	10,238,833	10,382,177
인건비(일반공무원)	847,368	129,912	175,641	178,100	180,593	183,122
인건비(소방공무원)	47,194,593	7,235,514	9,782,415	9,919,369	10,058,240	10,199,055

※ 매년 임금인상률 1.4%(예상치) 적용 계산

6.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① ~ ③ (생략)

④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제3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시·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시·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65,860	7,547	3,748	2,909	3,397	1,618	1,627	1,399	585	11,229	4,463	2,845	4,266	3,456	4,507	5,554	5,481	1,229
소방준감이하	65,860	7,547	3,748	2,909	3,397	1,618	1,627	1,399	585	11,229	4,463	2,845	4,266	3,456	4,507	5,554	5,481	1,229